

총학생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상명대학교 총학생회(이하 ‘본 회’라 한다)라고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 탐구와 건전한 대학 문화를 창달하며, 대학의 자율적 발전에 부응하는 실천 과정 속에서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설치) 본 회는 상명대학교 안에 둔다.

제 4 조 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상명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. (단, 대학원생은 제외되며 휴학 중에 있는 학생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)

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1.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3. 본 회의 회원은 사업 계획, 회비와 재정, 그 밖의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.
4.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율과 본 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 6 조 (지도) 본 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.

제 7 조 (기구)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학생총회, 대의원회, 상임위원회, 운영위원회, 총부학생회장과 집행부, 단과대학 학생회의 기구를 둔다. 다만, 캠퍼스별로 집행부의 하부 조직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 2 장 학생총회

제 8 조 (구성)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9 조 (의장)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. (단, 총학생회장 유고 시에는 부학생회장, 집행부장, 재직 단대 학생회장 1인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.)

제 10 조 (권한)

1. 학생총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는다.
2.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.
3. 대의원회 정·부회장의 탄핵권

제 11 조 (소집)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1.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6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2. 임시총회는 대의원회,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재직위원(의원) 2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, 본 회 회원 1/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12 조 (의결) 학생 총회는 회원 1/3의 출석과 출석 회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학생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 회의 회원은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3 장 대의원회

제 13 조 (지위)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 (단, 학생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을 시에 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한다.)

제 14 조 (구성)

1. 대의원회는 본 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2. 대의원은 우리 대학교 각 학부(과), 학년별 재학생들의 추천으로 선출된 대표로 한다. (단, 대의원은 과대표를 겸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임원 및 학생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.)

제 15 조 (의장)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 (단, 제 16 조 7 항에 따라 대의원회 정·부의장 징계 요구 시에는 총학생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.)

제 16 조 (업무 및 권한)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
2.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3.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, 상임위원회 선출권
4.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정·부회장의 탄핵권
5.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요구권
6.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
7.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의 징계 요구권
8. 예·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권
9. 집행부 승인권
10.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
제 17 조 (소집)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1.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,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/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상임위원회 2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3. 의장 궐위 시에는 상임위원회 1 인, 운영위원회 1 인의 순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4. 총회 소집 시 개최 6 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.

제 18 조 (의결)

1. 대의원회 의결은 제 16 조 제 1 호 및 제 4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제 16 조 제 1 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제 4 호는 재적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9 조 (임기)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 (단, 차기 상임위원회의 궐위 시, 상임위원회 재선거일까지 제 4 조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해 임기가 연장된다. 제 4 조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궐위 시,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권한을 대행한다.)

제 4 장 상임위원회

제 20 조 (구성) 대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둔다.

1. 상임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이 된다.
2. 상임위원은 각 단과대학 대의원이 호선한 대표 대의원 2인으로 한다.
3. 상임위원회는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21 조 (업무 및 권한)

-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운영위원회에서 부과한 안건에 관한 사항
 2.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 3.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

4.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상정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회계 및 사무 심사
7.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
8. 대의원회의 제반 사업과 예·결산 보고서의 검토, 조정 및 운영위원회 제출
9. 기타 회칙에 명시된 사항

(②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적 상임위원 2/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대의원총회에 가름할 수 있다. (단,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)

제 22 조 (의결) 상임위원회는 재적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

제 23 조 (지위)

1.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학생총회 의장,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부의 장이 된다.
2. 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. (단, 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.)
3. 총학생회 정·부회장 궐위 시,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. (단, 제 26 조 제 1 호의 집행부 임원 임면과 제 4 호의 본 회 전체 사업 계획 수립은 제외한다.)

제 24 조 (자격)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교에 4 학기 이상 등록하고 7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(단, 선거 이월 시에는 5 학기 이상 등록하고 8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제한한다.)
2. 전체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
3. 회원 10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4. 유급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제 25 조 (임기)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매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26 조 (업무 및 권한)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집행부 임원의 임면과 대의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
2. 본 회의 총회,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회의 소집과 이의 주관
3. 본 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
4. 본 회 전체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·결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의원총회 제출
5.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집행
6.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
7. 대의원회 활동 전반에서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의 징계 요구권

제 6 장 운영위원회

제 27 조 (지위)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.

제 28 조 (구성)

1.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1 인, 본 회 집행부 기획·총무부장으로 구성한다. (단,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동아리나 학부(과) 학생회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)
2. 예산 편성 시에 한하여 대의원회 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29 조 (업무 및 권한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학생회비의 책정 및 대의원회 상정
2.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3.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
4.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과 예·결산 보고서의 검토, 조정 및 대의원회 제출
5.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, 조정, 심의
6. 회칙 개정안의 발의와 대의원회 상정
7. 대의원회의 회계 및 사무 심사
8.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의결

제 30 조 (소집) 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
1. 정기 회의는 매월 1 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임시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.

제 31 조 (의결) 운영위원회는 재적 의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장 집행부

제 32 조 (지위)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제 33 조 (업무 및 권한, 조직)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
2. 총학생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 계획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의 운영위원회 제출
3. 집행부장은 총학생회 정·부회장이며, 집행부는 8 개 부로 조직하고, 각 부는 부장 1 인과 차장 1 인, 부원으로 구성한다. (단, 명칭과 부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.)
4. 집행부의 명단은 3월, 9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한다.

제 8 장 재 정

제 34 조 (재정)

1.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2. 본 회의 회비는 본 회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35 조 (회계 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며, 예산 집행은 2 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.

제 36 조 (예산)

1. 대의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, 금학기 학생회비 현황과 자치기구별 분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2. 각 자치기구는 사업 계획에 의하여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,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3. 운영위원회는 동 예산안을 검토 및 조정하여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,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(단, 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, 대의원총회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.)
4. 대의원총회는 예산안 접수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의하고,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하여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5. 대의원회 의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24 시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.
6. 예산 확정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입이나 지출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동 추경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7. 총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 당국에 위임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교의 일반회계 지출 절차에 준하여 총학생회장이 인출·집행한다.

제 37 조 (가예산) 본 회의 예산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본 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

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 38 조 (결산)

- 총학생회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집행부 및 단과대학 학생회가 작성한 해당 결산 보고서를 수합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,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대의원회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, 대의원총회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대의원총회는 결산안 접수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의하고,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하여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대의원회 의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24 시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.

제 39 조 (감사) 본 회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 (단, 대의원회의 사무 및 회계는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)

제 40 조 (이의 제기)

- 예·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, 대의원총회 결과가 공고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각 자치기구에 이의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각 자치기구는 이의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, 대의원총회에서 심의·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단, 신청자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)

제 9 장 단과대학 학생회

제 41 조 (지위) 단과대학 학생회(이하 ‘단대 학생회’라 한다)는 본 회 하부 구조로서, 당해 대학의 최고 학생 자치 기구이다.

제 42 조 (회원)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.

제 43 조 (회장 및 부회장)

- ①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당해 대학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
- ②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4 학기 이상 등록하고 7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(단, 선거 이월 시 5 학기 이상 등록하고 8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제한한다.)
 2. 전체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
 3. 당해 대학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
 4. 유급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③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총·부학생회장의 경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없다.
- ④ 단대 학생회장은 당해 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, 본 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.
- ⑤ 단대 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 사업계획 및 예·결산 보고서를 본 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 44 조 (집행부) 단대 학생회 집행부는 본 회 집행부에 준한다. 집행부장은 단과대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이며 2~4 명의 부장을 두고 집행부 인원을 별도로 구성한다. (단,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.)

제 45 조 (운영위원회) 단대 운영위원회는 해당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, 집행부 그리고 학부(과)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.

제 46 조 (상임위원회) 단대 상임위원회는 해당 단대별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, 그 상임위원 중에서 해당 단대 대의원이 선출한 의장을 둔다.

제 47 조 (업무 및 권한) 단대 학생회는 당해 대학의 각 학부(과)를 기반으로 본 회 제반 기구의 업무에 준하여 자치활동을 수행한다.

제 48 조 (예산) 단대 학생회 예산 배정은 대의원회 의장이 각 대학별 학생회비 제출 인원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

것을 원칙으로,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정한다.

제 49 조 (단대 학생회칙) 단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 회칙에 준하여 각 단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10 장 선 거

제 50 조 (선거 시기) 총·부학생회장,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 그리고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. (단, 1 학년 대의원은 당해 년도 3월 중에 선출한다.)

제 51 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) 본 회의 선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1. 총·부학생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상임위원회가 된다.
2. 각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대 학생회 집행부가 된다.
3. 위 제 1 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제 2 호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한다.

제 52 조 (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거)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 인 1 조가 되어 선거의 전 과정에 1 개 조로서 참여하고, 본 회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(단,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)

제 53 조 (단대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선거) 전 제 51 조에 준하며, 해당 대학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
제 54 조 (선거 방법) 제 51 조, 제 52 조의 선거는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선거로 하되, 당해 회원 30 %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. 전자 투표 또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.

제 55 조 (보궐선거)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기간이 150 일 이상일 때에는 15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제 56 조 (대의원 선거) 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각 학부(과)의 학년별 재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 전자 투표 또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.

제 57 조 (대의원 의장 및 부의장 선거)

1.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피선거권은 4 학기 이상 등록하고 7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에게만 있다. (단, 선거 이월 시에는 5 학기 이상 등록하고 8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제한한다.)
2.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에 있어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 58 조 (선거 시행세칙)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 11 장 회칙 개정

제 59 조 (발의)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적 대의원 1/5 이상의 발의
2.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/3 이상의 발의
3. 본 회 회원 100 인 이상의 발의
4.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2/3 이상의 발의

제 60 조 (의결) 본 회칙 개정 발의 시 대의원회 의장은 이를 6 일 이내에 공고 및 의결하고, 의결 후 3 일 이내에 공표한다.

제 61 조 (효력) 본 회칙 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12 장 학생지도위원회

제 62 조 (구성)

1. 본 회의 활동을 지도·육성하기 위하여 제 7 조에 명시된 기구의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

2. 본 회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 63 조 (기능)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회 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·감독한다.

1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조직에 관한 사항
3.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4. 예·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5.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7. 단, 위 1, 2, 3, 4 호의 경우 사전에 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8. 단대 학생회 학생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 학생회 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·감독한다.

제 13 장 보 칙

제 64 조 회칙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의 시행세칙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 65 조 기구는 캠퍼스별로 구성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상명여자대학 학도호국단 운영규정은 자동 폐지된 것으로 한다.

2. 이 회칙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교명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